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09
----------	-----

제출연월일 : 2007. 3. 3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산업자원부 고시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4조).
- 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 다.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 라.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추진에 인용한 산업자원부 고시명을 수정함
(안 제19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기본법,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전광역시”로, “시”를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시”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비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기기 및 자재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업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6. “수송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7. “건물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8.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

기관, 지방자체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9.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치구의 책무)”를 “(구의 책무)”로 한다.

제6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21조 제1항 중 “자치구”를 각각 “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역에너지계획)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기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관련 전문연구 기관 등의 자문과 의뢰를 통해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④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월 이내 대전광역시 공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시와 구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제6항 중 “시의 에너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담당사무관”을 “에너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법”을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을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로 한다.

제15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전광역시</u> (<u>이하 “시”</u> 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시·사업자·시민 등 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대전광역시</u> ----- ----- ----- <u>대전광역시</u> ----- ----- ----- -----
제2조(기본이념) ① <u>시</u> 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조(기본이념) ① <u>대전광역시(이하 “시”</u> 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에너지</u> ”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u>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u> ”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u>연료</u> ”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u>온실가스</u> ”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_2)·메탄(CH_4)·아산화질소(N_2O)·수소불화탄소(HFC_s)·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기 및 자재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신·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소수력·조력·해양에너지·지열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말한다.	5. “산업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수송부문”이라 함은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기 및 자재를 말한다.	7. “건물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8.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9.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0. 차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산업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3. 건물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4.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에너지이용 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시책자금으로 선 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신 · 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시민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p>제8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구----- ----- ----- ---</p> <p>제9조(지역에너지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의 자문과 의뢰를 통해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p> <p>④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월 이내 대전광역시 공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p> <p>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p> <p>9. 기타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의 자문과 의뢰를 통해 수립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p> <p>⑥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 공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p>	
제11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11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은 시와 자치구 공무원, 시의회의원, 시 교육공무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한다.</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시와 구 공무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시 교육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 ⑤ (생략)</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시의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경제정책과장 ----- ---- 에너지업무 담당사무관 --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 -----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생략) 1. ~ 2. (생략)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 4. -- 코-----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 재 설치 ② ~ ③ (생략)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u>자치</u> <u>구의</u>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구----- ----- ----- ----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관련 법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이하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 (금융 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 설치 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용역사업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기본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계획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1999. 1. 6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36호

개정 2001. 3. 1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33호

대전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1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 4. 12)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한 산업자원부 고시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4조).
- 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 다.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 라.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추진에 인용한 산업자원부 고시명을 수정함
(안 제19조제1항제3호).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예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앞의 내용과 같음.

2.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21조에서는 약칭사용을 정비 함.
-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용어를 정비 함.
- 안 제9조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함.
- 안 제1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 함.
- 안 제16조, 제19조에서는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띠어쓰기, 낫표 등을 정비 함.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 5. 10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곽수천 의원외 7인의 의원이 제안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2004. 6. 4 제정되어 운영해 오는 조례로서

- 산업자원부 고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일부조항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제명,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범시민 공감대 형성 및 중·장기적인 에너지관리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전담부서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